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5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권영희, 김경우,
김소양,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춘례,
김평남, 김화숙, 문병훈,
박기재, 박순규, 성중기,
송도호, 여 명, 오중석,
이상훈, 이석주,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전석기, 홍성룡,
황인구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관련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11조제2항)
- 나.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독립가구 형성을 위해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급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 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비용 지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라.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우처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u>한다</u>.</p> <p>③ ~ ⑤ (생 략)</p> <p>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p>	<p>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하며,</u> <u>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우처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④ ----- <u>제2항 및 제3항</u>----- -----</p>

한다.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②

(생략)

<신설>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

-----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서번호	2021101200000058
------	------------------

비용추계서

요청인 : 이성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12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2항의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급, 제13조제3항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보증보험 지원 등, 제14조제1항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비용 지원, 제15조제3항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발생

- 제14조제1항은 서울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비대상임

※ 2021년 서울영테크(청년 재테크 교육컨설팅) 구축 및 교육·상담 예산 : 180백만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안 제11조제2항의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급, 제13조제3항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보증보험 지원 등, 제15조제3항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의 지원비용

나. 전제

-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의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추계
- 해당 사업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라. 방법

-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의 아래 세부사업 예산안을 참조하여 추계
 - 청년 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급 사업
 -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
 - 청년 주거독립 지원(이사지원) 사업
 -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67,500백만원(연평균 3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2022	2023	2024	2024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원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100	100	100	100	100	500
	주거독립 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대중교통 요금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167,500
□ 총 비용(b-a)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167,5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
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us0@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안 제11조제2항의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급, 제13조제3항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보증보험 지원 등, 제15조제3항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의 지원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청년 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원 비용 ≍ 7,000백만원

○ 5년간 비용 산식 = $\sum_{i=1}^5(\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비용 ≍ 1,400백만원

※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의 청년 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원 예산안 참조

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비용 ≍ 500백만원

○ 5년간 비용 산식 = $\sum_{i=1}^5(\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비용 ≍ 100백만원

※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예산안 참조

다. 청년 주거독립 지원(이사지원) 비용 ≍ 10,000백만원

○ 5년간 비용 산식 = $\sum_{i=1}^5(\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비용 ≍ 2,000백만원

※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의 청년 주거독립 지원(이사지원) 예산안 참조

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비용 ≍ 150,000백만원

○ 5년간 비용 산식 = $\sum_{i=1}^5(\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비용 ≍ 30,000백만원

※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2025 서울청년 종합대책'의 청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예산안 참조